

인공지능과 아동 권리에 대한 공동성명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유엔 아동기금(UNICEF),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의회연맹(IPU),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 지역간범죄·사법연구소(UNICRI), 유엔 군축사무국(UNODA),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사무총장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특별대표 및 아동 폭력에 대한 특별대표, 아동 매매,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Safe Online(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우리, 서명 당사자들은 인공지능(AI)의 맥락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보호, 실현을 지지하며,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의 당사국, 유엔(UN) 기구, 국제기구, 기업¹,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특히 아래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통해 AI가 아동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증진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배포, 관리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AI의 설계, 개발, 배포, 관리에 있어 아동 권리에 기반한 접근²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하며, 아동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 25 호(2021)를 비롯해 기타 모든 관련 문서³를 재확인한다.

아동이란 18 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국제법상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자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및 인지적 발달은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을 뒷받침하는데, 이는 곧 아동이 점차 성숙해 가면서 성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획득해 간다는 사실⁴을 의미한다.

AI란 컴퓨터 시스템이 통상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과 기법의 집합을 지칭한다.

AI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 AI는 아동을 위한, 그리고 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해 왔다.

동시에 이는 아동 권리 실현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위험은 아동과 AI 시스템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AI 시스템이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도 미친다.

급속히 진화하는 AI 분야의 또 다른 과제는 AI의 설계, 개발, 배포, 관리에 관여하는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역량 강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아동, 교사, 부모, 보호자들의 AI 리터러시 부족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AI 프레임워크, 데이터 보호 방법, 아동권리영향평가에 관한 기술적 교육의 필요성도 포함한다.

AI의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도구와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그 기반의 모델, 기법, 시스템은 아동과 아동의 안녕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기술 기업의 책임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이다.

아동권리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는 기술의 종류와 무관하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지만,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AI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 25 호(2021)는 아동 권리가 적용되는 디지털 환경의 일부로서 AI를 인정하며, 일반논평의 다수 단락이 AI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을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정한 과제와 기회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권고사항

1. 국가의 아동 권리 기반 AI 거버넌스^{6,7}

국가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아동의 권리주체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를 보장하고,⁸ AI 맥락에서 아동 권리를 존중,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
- b) AI 맥락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할 명확한 권한을 가진 관련 정부 기관을 지정할 것.
- c) AI 맥락에서 아동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의 입법⁹, 감독, 예산, 홍보 관련 기능을 활용할 것.
- d) AI 및 아동 권리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에 있어,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세분화하며, 분석하고, 활용할 것.
- e) 아동권리영향평가를 포함해¹¹ AI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 평가, 예방, 완화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마련하고,¹⁰ 그러한 평가가 아동을 포함한 일반 대중이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f) AI 맥락에서 아동 권리 실현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
- g)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 국제기구, 기술 표준화 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아동 간의 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된 공공,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일관되면서도 맥락화된 AI 규범을 포함한 공동의 규범과 기준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
- h)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이,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아동의 존엄과 최선의 이익, 그리고 비차별 원칙을 포함한 아동 권리를 핵심에 두고 설계, 개발, 배포, 관리되도록 보장할 것.
- i) AI 시스템¹³, 도구, 플랫폼의 수명주기 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아동 친화적인 사법접근¹²과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할 것.
- j) 정책과 기술 표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핵심적인 AI 아키텍처(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구성 체계) 및 신규 AI 아키텍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 국제법에 따른 유엔 기구와 기타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의 아동 권리 기반 AI 거버넌스¹⁴

유엔 기구와 기타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AI와 관련된 모든 내부 및 외부 정책, 전략, 계획, 접근 방식 전반에 아동의 권리를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방식으로 통합할 것.
- b) 조직 내에서 AI 맥락에 따라 아동 권리를 조정, 보호, 증진할 책임이 있는 전담 부서 또는 담당 책임관을 명확하게 마련하거나 역량을 강화할 것.
- c) 아동 권리 기반의 상세한 지침과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 및 증진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배포, 관리되도록 윤리적 AI 관행을 확립할 것.

3. 책임, 책무성 및 투명성

- a) 국가는 자국 영토 및/또는 관할권 내에서 기업을 포함한 제 3 자에 의해 AI 맥락에서 발생하는 아동 권리 침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해당 영토 및/또는 관할권에 소재한 모든 기업이 AI 개발 및 배포와 관련한 사업 전반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 사항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¹⁵.
- b) 국가는 개인, 공공 및 민간법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하여,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¹⁶
- c) AI를 설계, 개발, 배포, 관리하는 국가와 기업은 AI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¹⁷.
- d) AI를 설계, 개발, 배포, 관리하는 국가와 기업은 자신의 AI 시스템에서 AI 시스템¹⁸, 도구, 플랫폼의 수명주기 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책무성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아동 사용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한다¹⁹.

- e) AI를 설계, 개발, 배포하는 기업은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에 따른 책임에 부합하도록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모든 실제적, 잠재적 영향을 예방, 식별, 완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감사와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²⁰. 이는 연령에 적합한 입력과 출력이 보장되도록 안전장치를 내재화하는 것, 유해 콘텐츠 분류기를 배치하는 것, 그리고 대항적 테스트 등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 사용 사례를 상정한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²¹.
- f) 시민사회단체는 아동 권리에 기반한 AI 거버넌스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문 기구, AI 윤리위원회, 규제 협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감독 및 책임성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 장려된다.

4. 아동 안전

- a)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을 통해, 또는 그 지원을 받아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아동에 대한 폭력과 아동 착취를 예방하고 대응할 것.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및 착취에의 노출 혐오 표현을 유포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아동 노동, 아동 인신매매, 아동 모집 및 사용, 특히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살해와 중대한 신체 훼손을 조장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한다. 유해 콘텐츠에는 딥페이크와 기타 AI가 생성한 기만적인 미디어, 혐오 표현, 폭력적 그래픽 자료, 아동 성 학대 콘텐츠, 아동 구걸 강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 및 조작 정보, 그리고 자해, 섭식 장애, 마약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의 사용, 도박 또는 기타 알고리즘으로 확산된 유해한 담론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다.
- b) 국가는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을 통해, 또는 그 지원을 받아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 또는 착취의 가해자를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하며, 적절히 제재하고, 사법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이는 AI로 생성하거나 변형된 아동 성학대물과 관련된 행위,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성적 공연을 포함한 아동 노동, 그리고 법률에서 정의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유인 또는 그루밍 등을 포함한다. 아동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아동이 특정 유형의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 c) 국가는 특히 소셜미디어, 교육 기술, 동영상 스트리밍, 게임을 포함한 AI 기반 플랫폼에 대해, AI와 관련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 기업이 데이터 보호 및 보호조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도구,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by-design) 및 안전 접근 방식을 내장하여 아동이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 접촉, 행위 또는 계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하며, 여기에는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아동 안전 필터(child safety filters)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아동 권리의 모든 제한은 적법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이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e) AI 기반 마케팅 도구 또는 추천 알고리즘은 아동을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설계, 개발, 배포되어야 한다.
- f)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모방하는 AI는 아동이 건강하지 않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단계의 특정한 보호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 g) 아동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는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 세트를 책임 있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 접근 가능하고 적응 가능하며, 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전략을 거치고, 적대적 오용에 대한 선제적 보호장치를 통합하여 개발, 구축, 학습되어야 한다.
- h)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에 부합하여, 군사 분야에서 AI 사용으로 인해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적대 행위나 무력 사용에 대한 모든 결정에서 AI 시스템이 인간의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하고, 인간의 판단이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며, 아동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쟁 지역에서 자율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아동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무기화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 i)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은 인간의 감독을 병행하여 유해 콘텐츠를 조기에 탐지하는 방식을 포함해, 아동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또는 소셜 네트워크는 사이버 괴롭힘, 착취, 그루밍 등 AI 관련 유해 행위를 탐지하여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인간의 감독은 필수적이며, 모든 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아동의 권리 보호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j) 국가는 아동을 위한 AI 맥락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아동 친화적이며 기밀이 보장되는 신고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 k) 국가는 AI 맥락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다부문, 다학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양질의 전문 심리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 l) 국가는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의 영향을 받아 법을 위반한 아동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5.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 a) 공정하고, 권리에 기반하며, 연령에 적합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정책적 조치가 채택되어야 하며, 이는 설계 표준에서부터 데이터 보호가 보장되도록 하고,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환경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법률은 투명하고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강력한 보호장치, 독립적인 감독,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
- b)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은 데이터 최소화 원칙(principle of data minimization)을 준수하여 필요한 데이터만을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며,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한다. 이는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c) 생체인식 정보를 포함한 아동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안전한 저장 관행 및 정기적인 데이터 감사와 같은 엄격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 무단 접근, 유출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d) 아동은 아동의 데이터, 관심, 디지털 활동을 수익화하는 지배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맥락을 포함한 상업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동의 없이 아동의 데이터를 AI 시스템과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을 위해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아동 최선의 이익

- a)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에서 AI의 설계, 개발, 배포,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나 결정에 있어, 국가는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일차적 고려 사항으로 삼아 이를 평가하고 결정하며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는 적법절차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²².
- b) 아동 최선의 이익은 AI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모든 권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보장하는 것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²⁴을 아우르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²³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c)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은 연령에 적합해야 하고,²⁵ 아동과 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하며, 특히 심리학자, 아동 권리 변호사, 교육자, 사회복지사, 연구자 등 기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해 일하는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학제적,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²⁶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7. 비차별과 포용

- a)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은 장애 아동, 여아, 선주민 아동,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 농촌 및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국어²⁷로 제공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²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모든 아동이 AI 기반 서비스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b)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AI 활용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에 대한 공평하고 유의미한 접근과 역량 강화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 c) 학습, 의사소통 및 접근성을 향상하는 보조 AI 기술을 포함한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은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통합해, 다양한 능력과 요구를 가진 아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d) AI 시스템, 도구, 플랫폼이 성별, 민족성, 인종, 장애, 신념, 언어 또는 기타 요인과 관련된 편향을 지속하거나 증폭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고, 알고리즘 편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인권 실사를 수행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8. 아동 참여

- a)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청취될 권리는 AI 정책의 모든 개발 단계와 AI 모델의 설계, 개발, 배포, 검토 과정에 다양한 아동 집단이 의미 있고 안전하게 참여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보장된다.
- b) 아동이 민주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AI 시스템, 도구, 제품의 설계, 개발, 배포 및 관리를 지원할 것.

9. 기후변화를 포함한 AI 및 환경

- a) AI는 기후 모델링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및 자원 관리를 최적화하며,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포함한²⁹ 아동과 미래 세대의 권리 및 안녕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b) 탄소 발자국, 에너지 소비, 그리고 AI 기술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원자재 채굴의 환경적 영향³⁰을 포함한 AI의 환경적 영향은,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AI 개발이 아동 권리 실현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와 관련된 관점에서 신중하게 평가되고 완화되어야 한다.

10. 역량 강화

- a) 국가는 중앙, 연방, 지방 수준의 정부 대표와 국회의원³¹을 포함한 관련 국가 공무원들의 아동 권리 실현과 관련한 AI의 기회와 위협에 대한 역량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근거 기반 연구와 모범 사례에 기초한 AI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며, 이를 토대로 견고한 아동 권리 기반의 AI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경찰관, 검사 및 판사 등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는 AI와 AI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c) 경영진과 AI 설계자, 개발자, 배포자를 포함한 기업의 대표는 아동의 권리와 AI와 관련된 그들의 사업 및 서비스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히 교육받아야 한다.

11. 교육, 과학 및 인식 제고

- a) 적절하고 근거에 기반한 경우, 모든 아동이 기술적, 비판적 AI 리터러시를 모두 갖추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AI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에 책임감 있게 통합되어야 한다.
- b) 모든 아동이 그들의 배경과 관계없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AI가 자신의 권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는 학교 교육과정³²에 통합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 간 AI 격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통해 소외된 집단을 지원하는 데 특별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
- c) 아동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에 관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d) 국가는 아동 권리를 위하여 AI 혁신을 활용해야 한다. 국가는 AI 연구에 대한투자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특히 AI 윤리 연구를 포함한 AI 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해당 연구가 아동 권리 실현의 관점에서 AI 기술³³의 추가적 개발 및 개선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e) 부모, 기타 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은 AI 자체와 그 위험 및 기회를 이해하고, 자녀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AI를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와 지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f) 아동, 부모 및 일반 대중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AI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공동 서명 기관



Contributors



Endnotes

- 1 Se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1).
- 2 A child rights-based approach helps translate the theory of the Convention into practical actions, steps and solutions.
- 3 ILO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ILO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Geneva Conventions of 1949; The Pact for the Future, including the Global Digital Compact (2024); Governing AI for Humanity: Final Report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CRC-IPU Joint Statement on the Role of Parlia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Optional Protocols (2022);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ESCO, 2021); Policy Guidance on AI for Children (UNICEF, 2021);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8/187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3);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1);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9/239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024);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8/265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2023);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8/213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digital technologies (2023);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8/311 on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apacity-buil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8/265 on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4);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9/243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bating Certain Crimes Committed by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ystems and for the Sharing of Evidence in Electronic Form of Serious Crimes (2024);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9/460 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 (2024);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Report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1); Report A/79/122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2024);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6/6 on safety of the child in the digital environment (2024); Report A/79/520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2024).
- 4 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Child Rights Mainstreaming (UN, 2023).
- 5 Policy Guidance on AI for Children (UNICEF, 2021, page 7).
- 6 Further building on the human-centric principles or human-centred approach established in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ESCO, 2021).
- 7 See Civic Space & Tech Brief: Key Asks for State Regulation of AI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5).
- 8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3, para. 4).
- 9 IPU Resolution on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2024, page 2).
- 10 See Article 16 of 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24).
- 11 See UNICEF Assessing child rights impac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Implementing the D-CRIA Toolbox (2025).
- 12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Child-Friendly Justice (Council of Europe, 2010).
- 13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24).
- 14 Further building on the Global Digital Compact (2024, para. 7.5).

인공지능과 아동 권리에 대한 공동성명

- 15 Se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1).
- 16 See ILO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 17 See Article 8 of 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24).
- 18 See Article 9 of 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24).
- 19 Se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1).
- 20 Ibid.
- 21 A method for systematically evaluating a machine learning model for the purpose of learning how it behaves when provided with input harmful to privacy, safety and the full range of children's rights.
- 22 See CRC general comment No. 14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para. 1).
- 23 See CRC general comment No. 14 (2013, para. 4).
- 24 See CRC general comment No. 5 (2013, para. 12).
- 25 Governing AI for Humanity: Final Report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page 32).
- 26 See the Global Digital Compact (2024, para. 54).
- 27 Governing AI for Humanity: Final Report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page 32).
- 28 See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ESCO, 2021, page 8).
- 29 See CRC general comment No. 26 (2023)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 (para. 63).
- 30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ESCO, 2021, page 15).
- 31 IPU Resolution on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2024, page 3).
- 32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ESCO, 2021, page 17).
- 33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ESCO, 2021, page 17).

ITU 발행물

2025년 제네바 스위스에서 발행

ITU 면책 조항: <https://www.itu.int/en/publications/Pages/Disclaimer.aspx>



국제전기통신연합(ITU)

Place des Nations, CH-1211 Geneva Switzerland